

강원관광대학 직제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하여 강원관광대학(이하 “본대학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직제는 법령,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3 조 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기구) 본 대학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 및 학과, 대학본부, 지원시설, 연구시설, 부속시설, 산학협력단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.

제 5 조 (정원) 본 대학 교직원의 정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장 구 성 원

제 6 조 (교원 및 일반직원) ① 본 대학에 총장과 교원 및 일반직원을 둔다.(개정 2010.3.2)

②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및 조교로 한다.

③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직 : 참사(4급), 부참사(5급), 주사(6급), 부주사(7급), 서기(8급), 부서기(9급)

2. 기술직 : 6급, 7급, 8급, 9급

3. 기능직 : 7급, 8급, 9급, 10급

4. 제 2항의 교원 이외 초빙교원 및 겸임 교원을 둘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

를 위촉할 수 있다.

5. 제 3항의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 이외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해 계약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,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단, 일반직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.

6.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직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기 구

제 7 조 (총장)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대학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(개정 2010.3.2)

② 총장실 산하에 부속실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0.3.2)

제 8 조 (계열 및 학과) 각 계열 및 학과에 계열 학부장 및 학과장을 각각 두고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9 조 (각 부서의 장) 교학처장, 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행정지원처장은 참사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, 각부서의 과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(개정 2010.3.2)

제 10 조 (대학본부) ① 본 대학에 교학처, 기획처, 행정지원처를 두고, 교학과, 기획과, 총무과, 관리과와 기타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0.3.2)

② 대학본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 (지원시설) ① 본대학에 지원시설로 전산실, 도서관, 학보사, 보건실, 예비군 중대를 둔다.(개정 2010.3.2)

② 지원시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 (연구시설) ① 본 대학에 연구시설로 학생생활연구소, 강원문화관광연구소, 경영혁신연구소, e-산업연구소, 인재개발교육연구소를 둔다.(개정2008.1.8, 2008.7.4)

제 13 조 (부속시설) ① 본 대학에 부속시설로 평생교육원, 기숙사를 둔다.(개정2008.1.8.)

② 부속시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4 조 (산학협력단) ①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을 촉진·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하여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 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.)을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와 기타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.(개정2008.1.8.)

③ 산학협력단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정관 변경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행정부서 명칭은 본 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폐지) 이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직제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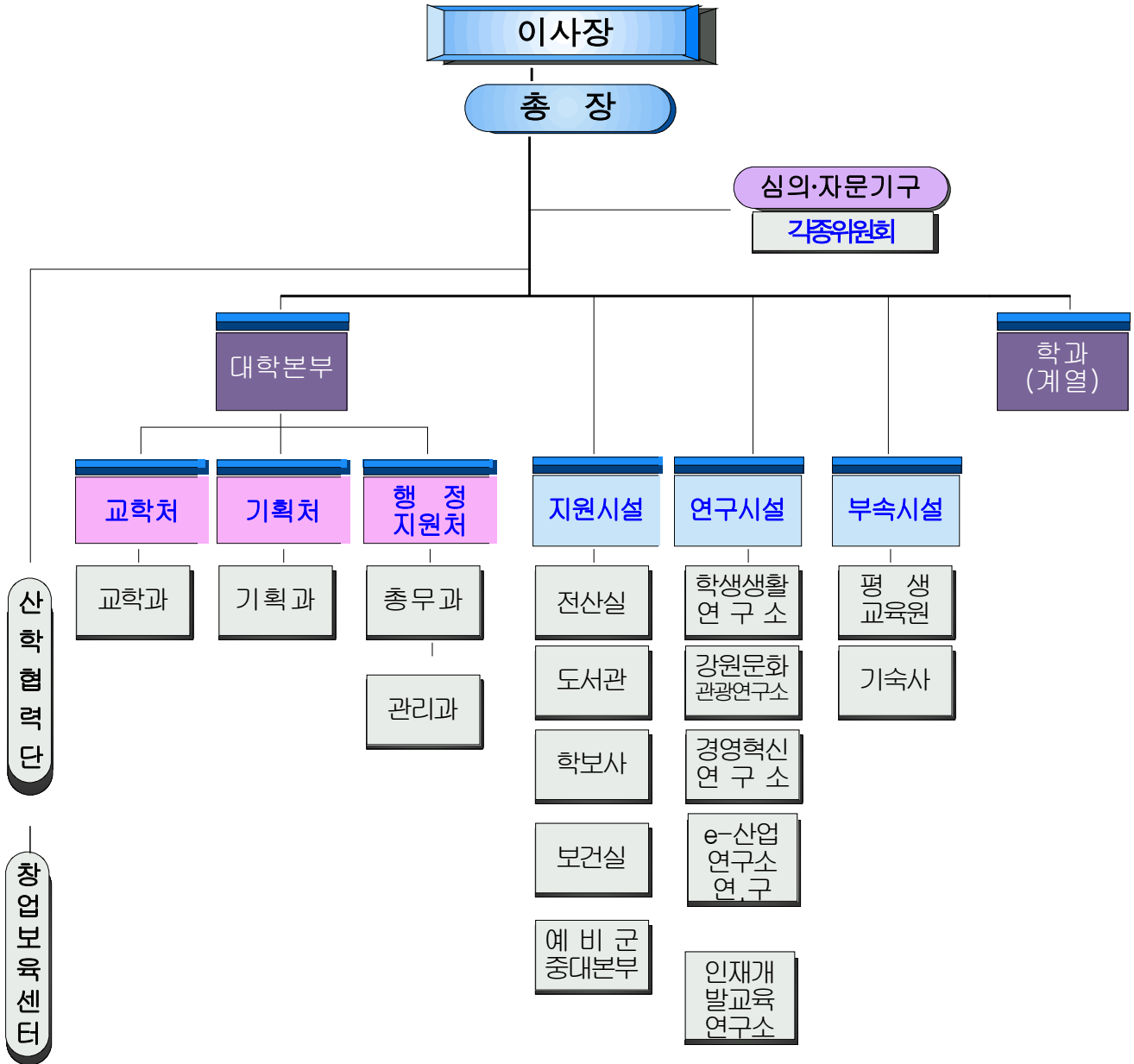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<별표1> (개정2008.1.8, 2008.7.4, 2010.3.2)

강원관광대학 기구표



산학협력단

창업지원센터